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181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

○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구성 요건을 정비하여 전문성 제고

2. 주요내용

○ 위원회 구성 부위원장의 요건 정비(안 제5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 : 2025. 7. 24.~8. 14.(21일간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 : 해당 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과장”을 “과장급 이상 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토지정보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토지정보과장 심 우 섭
	팀장 직위 · 성명	주소관리팀장 김 효 영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이 한 준 (031-790-521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. ③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과장급 이상 공무원-----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약칭: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)

[시행 2025. 2. 21.] [대통령령 제35246호, 2025. 2. 7., 타법개정]

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9. 19.>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**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**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

[본조신설 2023. 6. 9.]